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3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신규 위임사무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조문정비(안 제1조~제3조)
 - 목적, 권한 위임사항, 감독
- 부서명칭 변경(안 별표 1) : 농산지원과 → 유기농산과
-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(안 별표 1)
 -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권한사무의 신설 : 19건
 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권한 위임사무의 삭제 : 15건
 - ※ 시장·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

4. 검토의견

- 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 - 「약사법」,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건설기계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의 사무(15건)를 시장·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하는 것과
 -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권한 위임사무(19건)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 - 또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과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-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며,
- 위임사무가 민원 편리성,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한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됨

붙임 :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